

대학원 전문간호사과정 내규

제1조(목적) 이 내규는 대학원 전문간호사과정의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전문간호사과정의 종류) 전문간호사과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(개정 2021. 3. 1., 2023. 3. 1., 2025. 9. 1., 2026. 9. 1.)

1. 노인전문간호사과정
2. 종양전문간호사과정
3. 감염관리전문간호사과정
4. 가정전문간호사과정

제3조(지원자격) 국내외 간호대학 졸업자 혹은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중 간호사 면허소지자로서 최근 10년 이내에 아래 각 호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관에서 3년 이상 간호사로서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.(개정 2021. 3. 1., 2023. 3. 1., 2025. 9. 1., 2026. 9. 1.)

1. 노인전문간호사과정
 - 가. 의료기관
 - 나.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노인복지시설
 - 다. 「지역보건법」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른 보건진료소
 - 라.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른 장기요양기관
 - 마. 「치매관리법」에 따른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
2. 종양전문간호사과정
 - 가. 「의료법」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(종합병원 외에는 암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)
 - 나. 「지역보건법」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(암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)
3. 감염관리전문간호사과정
 - 가. 「의료법」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
4. 가정전문간호사과정
 - 가.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기관
 - 나. 「지역보건법」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또는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른 보건진료소
 - 다.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른 장기요양기관

제4조(모집정원) 모집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(개정 2021. 3. 1., 2023. 3. 1., 2025. 9. 1., 2026. 9. 1.)

1. 노인전문간호사과정: 10명
2. 종양전문간호사과정: 7명
3. 감염관리전문간호사과정: 10명
4. 가정전문간호사과정: 10명

제5조(교육과정 운영) ① 교육과정은 기초공통과목, 전공이론과목, 전공실습과목으로 운영

한다.

- ② 강좌개설을 위해 학과장은 학기 시작일 1개월 전에 학과 교수회의를 거쳐 강좌계획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개설 교과목당 수강인원은 5명 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④ 교과 학점 이외에 학위취득을 위해 1학기 이상의 연구 지도를 받아야 한다.
- ⑤ 그 밖의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운영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운영 지침에 따른다.(신설 2025. 8. 4.)

제6조(학점 이수) ① 학점 신청은 매 학기 12학점 이내로 신청할 수 있다.

- ② 전문간호사과정을 위해 개설된 과목 중에서 33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.

제7조(학위수여) 학위수여는 연 1회로 한다.

제8조(일반 석사과정 변경) 전문간호사과정생이 17학점 이수 후 본인의 요청에 의해 일반 과정으로 변경을 요청할 경우 간호학과 교수회의를 통해 심의 결정한다.

제9조(장학금) 대학원 장학금 지침에 준하여 지급한다.

제10조(기타) 이 내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대학원 학칙」 및 「대학원 학칙 시행세칙」을 따른다.

부 칙

1. 이 내규는 2020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※ 본 내규는 소관부서의 내부결재와 소관위원회 심의 등을 통하여 하기 이력과 같이 자체적으로 제정 및 관리하였던 내규이나, 「규정류 관리 규정」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관리하고자 기획위원회 및 교무회의 심의를 통하여 위 시행일에 '규정류'로 제정되었음

<과거 개정 이력 및 부칙>

1. 이 내규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(경과조치) 2005년 3월 1일부터 운영된 전문간호사과정은 이 내규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한다.
2. 이 개정내규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3. 이 개정내규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4. 이 개정내규는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5. 이 개정내규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6. 이 개정내규는 201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2. 이 개정내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3. 이 개정내규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4. 이 개정내규는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5. 이 개정내규는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6. 이 개정내규는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